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건설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 길라잡이



- 건설근로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사의 편법 활용과 원천징수에 대한 일용근로자의 반발 등으로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신고건 중 상당수가 임금체불이며 불법적인 단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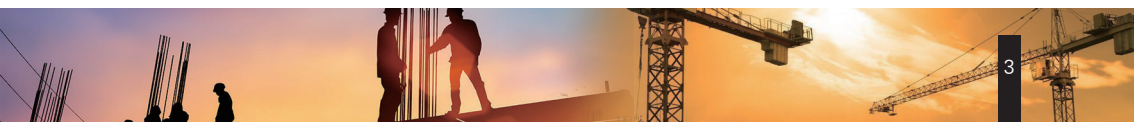
- 본 매뉴얼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 원리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예외사항이나 특례규정 등은 해당 실무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율은 매년 상이하므로 당해 연도 보험료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 길라잡이

1. 건설근로자 4대보험 가입	4
1) 국민연금·건강보험	4
2) 고용보험·산재보험	5
3)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안내	6
2. 건설근로자 임금 및 표준근로계약서	8
1)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8
2) 최저임금 및 표준노임단가	9
3)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10
4) 임금체불의 처리절차	11
3. 퇴직공제제도 및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공제회)	12
1) 퇴직공제제도	13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4. 기타 유용한 정보	14
1)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14
2) 산업재해	15
〈별첨〉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16



1

건설근로자 4대 보험 가입

☑ 건설일용근로자도 사회보험(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네, 건설일용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

● 건설일용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 ◎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보험료 산정 방법

- ◎ 일용근로자는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 자격취득 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고, 가입기간 중에는 사업장에서 신고된 실제 소득월액에 따라 적용
- ◎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18.7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건강보험료율은 6.24%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7.38% → 가입자 부담률은 50%

● 문의처

- ◎ 국민연금공단(☎1355)
 - 인터넷 www.nps.or.kr 접속 → 내 연금(노후준비) → 내 연금 알아보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인터넷 www.nhis.or.kr 접속 → 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



2) 고용보험·산재보험

●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적용사업장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 ◎ 건설업에 있어 수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 보험료 산정 방법

- ◎ 개선보험료 산정 = 당해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 확정보험료 산정 = 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보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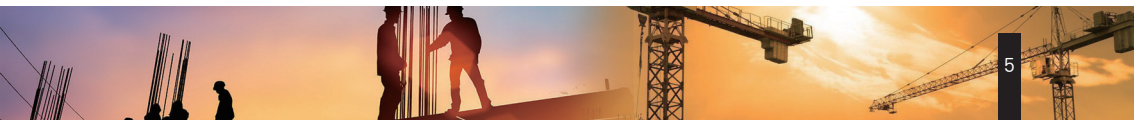
고용보험료율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
실업급여		0.65%	0.65%	4.05%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고용보험 가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절기 등 일감이 없거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정부가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지원을 받으며 교육훈련 수당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인터넷 <http://minwon.moel.go.kr> 접속 → 자주하는 질문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인터넷 www.kcomwel.or.kr 접속 → 근로자복지서비스



3)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안내

● 사후정산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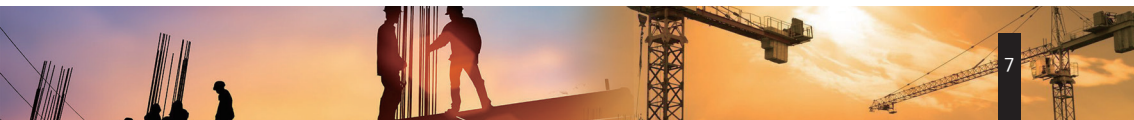
- 건설업체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연금/건강)은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 적용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합니다.
- 또한,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다음달 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 보험	공사구분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정산대상	보험료 청구서류
건강보험	원도급 공사	민간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1. 일용근로자 2.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자는 포함함) →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 직접 노무비 대상으로 간주하여 보험료 정산대상임	1. 보험료 납입확인서 2.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 확인서 3. 그 외 정산을 위해 요청한 서류
		정부 발주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 직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의 합계액임. ※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현장감독자를 말함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에 반영됨					
국민연금	하도급 공사	민간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1. 일용근로자 2.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공사 구분 없이 원도급사마다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현장운용 상황에 따라 적용/미적용 하고 있음	1. 보험료 납입확인서 2. 그 외 정산을 위해 요청한 서류
		정부발주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 하도급계약서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 정산대상에서 제외 ※ 하수급자에 현장소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신고한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기술자에 해당 할 경우 정산 대상임. → 위 기준에 따라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현장운용방식에 따라 정산대상 포함·미포함 되고 있음					



4대 보험료율 및 가입기준 한눈에 보기

보험료율			소계	건설업 일용직 가입 기준	적용 제외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4.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1개월미만 근로자 (상용, 일용) - 만 18세 미만자, 만 60세 이상자
	근로자 부담	4.5%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3.12%	6.2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¹⁾산출된 건강보험료의 (7.38%) : 근로자 부담(3.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근로자 부담	3.12%			
	노인장기	3.69%	7.38% ¹⁾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0.95% ~ 1.5%	1.55% ~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1일을 근무하더라도 의무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외국인(예외규정 있음) - 만65세 이후 입사자는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1.3%) 고용 안정·직능개발은 적용 (0.25%)
	근로자 부담	0.65%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4.05%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제8조 산재보험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제외자 없음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가능)
	근로자 부담	0%			



2

건설근로자 임금 및 표준근로계약서

- ☑ **일용 근로자의 정의** :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각 법령에 명시적인 정의가 없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업무처리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령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 ①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정의를 따르며 보통 월 60시간 미만 혹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건설업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③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④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제외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최저임금 및 표준노임단가

☑️ 건설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감액(90%)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주 40시간 기준 1,573,770원

※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

🌐 위반의 조치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최저임금법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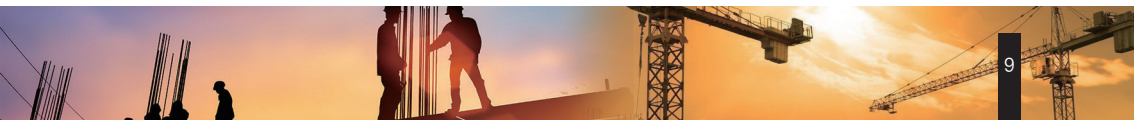
🌐 2018년 상반기 평균임금 : 193,770원 (*17년 하반기 대비 4.16%상승)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종	광전자 직종	문화재 직종	원자력 직종	기타 직종
2018. 1. 1 (2017년 9월)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0,322	222,895	209,344
				(117)227,439		

🌐 2018년 상반기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현황

- 작업반장 137,535원
- 보통인부 109,819원
- 특별인부 133,417원
- 비계공 196,261원
- 형틀목공 189,303원
- 철근공 189,585원
- 콘크리트공 176,062원
- 포장공 154,530원
- 조적공 161,334원
- 건축목공 175,760원
- 방수공 130,819원
- 미장공 175,547원
- 타일공 174,390원
- 배관공(수도) 163,848원
- 건설기계운전사 162,022원

※ 출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3)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반의 조치

- 2014.8.1. 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하지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임금체불의 유형

- ① 수급인이 도급금액 미지급, 원자재공급 지연 또는 미지급, 도급계약조건 불이행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② 2차례 이상의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루어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공사의 손실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상수급인(또는 원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④ 수급인이 임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미지급한 경우
- ⑤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임금 지불했는데도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임금체불이며,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임금체불의 처리절차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 ◎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당사자 해결

- ◎ 체불임금 산정 → 산정된 임금 지급요구
 - 체불임금 산정자료 : 임금대장, 퇴직증명, 근로자명부 등
 - 지급요구 : 구두, 서면(내용증명)
- ※ 지급 불이행시 임금채권은 민법상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상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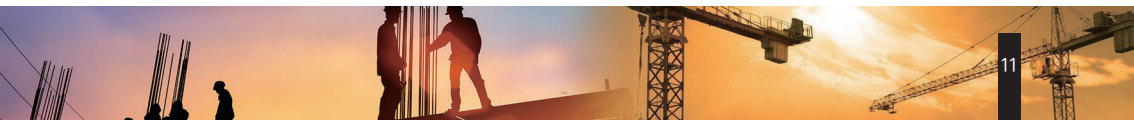
- ① 고용부(청)에 진정서, 고소장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등)
- ②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조사(1~2주소요) : 노무사에게 위임하면 대리출석조사 가능
- ③ 고용부(청) 지급지시(체불이 해소되면 진정서 등을 취하가능)
- ④ 지급 지시불응 시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 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판사) 벌금, 실형선고 등을 결정

● 민사소송절차(개요)

- ◎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인지필요)제출
 - 답변서(준비서면)제출 및 쟁점정리(법원) → 주장 및 증거, 증인신청
 - 재판기일 지정 통지 → 판결 → 송달 → 집행
-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132) 서비스 활용
- ※ 소송 당사자 간 쟁점이 없는 경우 민사조정제도나 지급명령제도 활용(비용절감)
- ◎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 : 변제받을 때까지 회사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 채무명의 확보(정식재판, 소액심판, 지급명령 공증 등)
- ◎ 강제집행절차(경매절차,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 임금의 시효

- ◎ 임금채권은 3년간(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



3

퇴직공제제도 및 전자카드제도입(건설근로자공제회)

1) 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건설사업장을 자주 이동하며 일하느라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건설근로자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이란?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사업주가 소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매월 근로한 일수만큼 공제회에 신고·납부하는 금액으로, 대상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입니다.
※ 2018.1.1.일자 퇴직공제금은 5,000원임.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 3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에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는 소속업체나 국적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 인터넷 www.cwma.or.kr 접속 → 소통과 참여 → 자주하는 질문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퇴직공제금 청구시스템(<http://1122.cwma.or.kr>)
-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E-Mail(1122@cwma.or.kr)접수)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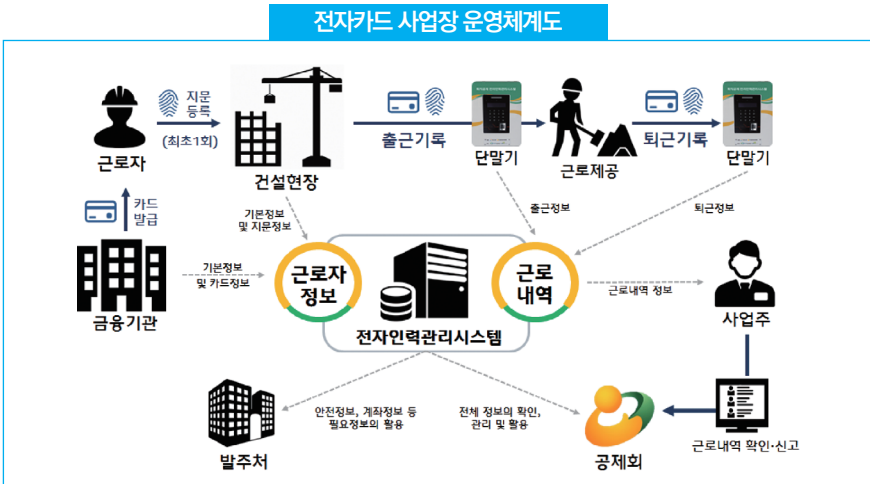
- ◎ 근로자가 현장의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카드나 지문으로 남긴 기록을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 현장 간 이동 근무가 빈번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약자의 피해(임금체불, 4대 보험 신고 누락 등)를 방지하고 정확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함입니다.
- ◎ 건설근로자 우대혜택을 담은 전자카드 전용 금융카드로서, 근로자 기호에 따라 체크(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부산시 도입 추진(2018년)

- ◎ 부산시↔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MOU) 체결 : 2018년 4월
- ◎ 대상공사 : 시, 공사·공단 발주 50억 이상 건설공사(12개소)
- ◎ 도입시기 : 2018년 하반기

● 문의처

- ◎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051-888-2674)
-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4 기타 유용한 정보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 일반근로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1)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 입증서류

- ◎ 외국인(90일 이하 체류) : 여권사본 / 그 외 : 외국인등록증사본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 건강보험

- ◎ 산업연수(D3) / 비전문취업(E9) / 방문취업(H2)
→ 귀국예정 → 장기요양보험료 부적절 → 별도의 가입제외신청서

● 고용보험 : 원칙은 미적용

-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당연가입대상
- ◎ 취업자격(E1~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임의가입
- ◎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작성

구 분	적용대상	근로자	사업주	자격관리/보험료납부
국민연금	· 1개월간 8일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 · 상호주의 원칙	기준소득월액의 4.5%	기준소득월액의 4.5%	사업주/사업주
건강보험	· 1개월간 8일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3.12%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3.69%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3.12%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3.69%	사업주/사업주
고용 보험	· 외국인근로자 임의 가입 (E-9, H-2)	보수총액의 0.65%	보수총액의 0.65%	사업주/원수급인
			보수총액의 0.25% ~ 0.85%	
산재보험	· 모든 일용근로자	없음	보수총액의 4.05%	원수급인/원수급인



2)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 산업재해 발생 시 유의사항 ★

-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
-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영수증을 잘 보관!

🔵 산재보험이란?

- ◎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치료비 요양급여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건설공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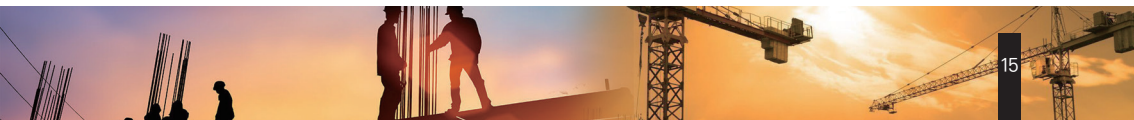
- ◎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당연일괄 적용)
-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개인 직영공사 등)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이고,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개인 직영공사) 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령, 국적, 학생,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

🔵 문의처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인터넷 www.kcomwel.or.kr 접속 → 산재보상서비스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주40시간제 : 기간제 근로자(일급, 1일 8시간 근로 기준)

사용자(갑)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갑”과 “을”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근로계약기간 :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공종, ____현장) 종료일까지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사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주처의 공사중단·설계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2. 근로장소 및 작업공종 : _____ 현장 _____ 공종

3. 임금

- (1) “을”의 임금은 일급 _____ 원으로 하며, 연장·야간(22:00~06:00)
 · 휴일근로시에는 시급의 50%를 각 가산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 (2) “갑”은 “을”의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별도로 성과급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3) 임금은 매월 ____일(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임금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내지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을”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근로기준법」임금관련

구분 (주요위반사항)	법조항	주요내용	비고
임금지급 위반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제 109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위반	제44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直上)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상 동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4조 의2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있는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直上)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짐.	상 동
비상시 지급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함.	제113조: 1천만원 이하 벌금
도급 근로자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함.	제114조: 5백만원 이하 벌금
임금대장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함.	제116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자료〉

1.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서비스 길라잡이 2017(건설근로자공제회)
2. 2017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불법·불공정 하도급신고

◆ 불법하도급 신고

부산광역시	구·군	
건설행정과	건설과 (총괄접수)	건축과 (민간부분 접수후 현장조사)
051) 888-2671~5		

◆ 임금체불 신고(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 051) 850-6440

◆ 하도급 거래질서 위반신고(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 051) 460-1041~5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